

■ 법률 칼럼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적정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 인 능력 (Ability to Pay) 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

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 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구강 위생 이야기

칫솔은 약 1,000년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나무가지 끝을 잘게 으깨거나, 동물을 털을 사용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일론이나 다른 탄력이 있는 화학섬유들을 사용하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칫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300여종이 넘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잔여 음식물이나 타액에 들어있는 단백질들과 어우러져 끈적이는 플라그(치태)를 만듭니다.

2002년 Academy of General Dentistry에 따르면 미국인의 74% 정도가 치은염에서부터 심한 치주염에 이르기까지 일정 정도의 잇몸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회는 또한 평균잇솔질 시간이 45초에서 70초 정도로 권장 잇솔질 시간인 2-3분보다 절반도 안되는 시간동안 잇솔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잇솔질과 관련된 미국치과 의사협회 (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구강위생에 관한 권장사항에 대해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에 최소 한 두번 잇솔질을 하십시오.
-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십시오.
- 칫솔은 3-4개월마다 교환하여 사용하십시오.
- 최소한 하루에 한번 치실을 사용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십시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하지만 잇몸병은 개개인마다 그 민감도나 병변의 진행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 상태를 충분히 이해한 뒤 그에 맞는 구강 위생 관리법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각종 보철 치료를

받으신 경우 이런 보철물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강 위생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셔야 오랜 기간동안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 농담처럼 주고받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한번쯤 생각해볼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리고 싶은 치아들만 닦으세요. Only brush the teeth you want to keep.”

여러분은 어떤 치아들을 살리고 싶으세요? 전부 살리고 싶으시면 전부 닦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치아나 잇몸건강을 위한 잇솔질에 신경을 쓰면서 과연 혀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 혀에는 입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약 50%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혀를 닦음으로써 입냄새를 75% 정도 줄일 수 있고, 치태 또한 1/3가량 줄일 수 있으므로 잇솔질을 하면서 혀도 닦아 줌으로써 보다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항은 잇솔질 회수나 시간보다 올바른 잇솔질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잇솔질 습관에 따라 잇솔질 방법도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구강 위생 증진을 위한 여러 구강 위생 용품들의 사용도 고려해야하므로 자신의 구강 위생 상태와 잇솔질 방법 등에 대해서 치과 전문의들에게 올바른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